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35
----------	-------

발의연월일 : 2024. 2. 20.

발 의 자 : 김은희 · 송석준 · 황보승희
김희곤 · 권명호 · 백종헌
김미애 · 지성호 · 윤한홍
박 진 · 윤주경 · 이양수
박성중 · 조정훈 · 임병헌
노용호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피해자(신고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신고자)의 신체적 안전과 신변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성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폭행, 살인 등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을 해소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자를 피해자와 동일 지역에서 분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2차피해방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⑤ 국가는 2차 피해 방지 및 보복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2차피해방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성폭력 2차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③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u>④ 국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u>

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또는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⑤ 국가는 2차 피해 방지 및 보복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절차·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위치정보 제공의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